



일본



일본 외부감사제도

정보신청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I. 개요

한국의 현행 외부감사제에 상응하는 일본의 제도로는 회계감사인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외부감사제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제도는 2005년 7월 26일에 공포된 회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회계감사인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사법상의 회계감사인과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의 법적인 위치의 차이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서의 기업회계와 회계감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란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등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에 대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측정·보고하는 것이며, 회계감사란 경영자가 작성한 계산서류 등을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적정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가 조사·판단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II. 입법 배경과 연혁

일본에서는 1974년 상법특례법 제정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기구인 감사역(監査役)에 의한 것만 존재했기 때문에, 전문직업적 논리에 근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외부감사는 상법의 감사와는 별개로 증권거래법이 그 적용회사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1974년의 상법특례법에 의해 대회사(大會事)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81년의 동법 개정에 의해 회계감사인이 대회사의 회계감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감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와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만약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의 회계규제의 목적이 다르다면, 감사역은 상법에 근거하여 감사를 하면 되지만 회계감사인은 상법에 근거하

는 감사와 증권거래법에 근거하는 감사를 구별하여 행하여야 한다. 상법에 의한 감사는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위한 것임에 반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상법의 회계감사인과 증권거래법의 감사인은 각각의 규제목적에 따라 각각의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배경으로 2005년 7월 26일에 회사법이 공포되었지만, 문제가 된 회사법상의 회계감사인의 법적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회사법상의 회계감사인의 주요 내용

1. 설치 범위

회사법에서는 자본금이나 부채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 회계감사인을 두는 것이 가능하고(회사법 제326조 제2항), 또한 회계감사인의 설치가 강제되는 회사는 대회사(회사법 제328조 제1항)이지만, 공개회사(회사법 제2조 제5호)가 아닌 대회사도 회계감사인을 설치하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회사법 제328조 제2항) 회계감사인의 설치가 강제되는 범위는 확대되었다.

2. 회계감사인이 설치되는 경우의 기관설계

회사법에서는 위원회설치회사를 제외하고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에는 감사역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327조 제3항). 즉, 회계감사인을 두어도 공개 대회사 이외에는 감사역을 두는 형태로써 1981년 개정 전의

형태를 공개 대회사 이외의 회사에도 허용하여, 법률의 유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회계감사 권한만을 가지는 감사역과 회계감사인과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법에서는 공개회사 이외의 회사 중 감사역회 설치 회사 및 회계감사인 설치회사 이외의 회사는 당해회사의 감사역의 권한을 회계감사 권한에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을 규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389조).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에 관해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 감사 권한을 가지는 감사역의 존재가 제도상 불가결함에 따라 감사역의 감사권한을 회계감사권한에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을 규정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3. 회사와의 관계

회계감사인과 주식회사의 관계는 임원(대표이사, 회계참여 및 감사역)과 같이 위임관계에 있다(회사법 제330조).

4. 선임 해임 혹은 불신임 또는 해임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된다(회사법 제329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설립시에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다(회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 제88조).

회계감사인과 주주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651조 제1항). 또한, 회계감사인의 사망,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자인 주식회사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종료된다(민법 제653조).

5. 자격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회사법 제33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로서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해 주식회사에 의무지어진 계산서류 등에 관해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회사법 제337조 제3항 제1호), 주식회사의 자회사 혹은 그 대표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혹은 집행역으로부터 공인회계사 혹은 감사법인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계속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동조 제2호), 감사법인으로써 그 사원 반 수 이상이 전호에서 열거하는 자(동조 제3호)로 규정되어 있다.

6. 임 기

회사감사인의 임기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중 최종의 것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되어 있지만(회사법 제388조 제1항)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임되는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임기를 1년으로 주주총회에서 매년 1회 회계감사인의 선임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회계감사인이 자가지위의 확보만을 피하게 되어 그 독립성이 위협받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회계감사인은 당연히 재임되는 것으로 하며, 특히 재임하지 않는 결의가 내려진 경우에만 임기가 만료하여 퇴임하는 것으로 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오히려 공인회계사의 적격성에 관해 주주가 체크하는 기회를 방해하여 현재의 회계감사인을 고정화하여 회사와의 유착을 일으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7.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회계감사인에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감사인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지체없이 회계감사인이 위임되지 않을 때에는 감사역설치회사는 감사역, 감사역회설치회사에서는 감사역회, 위원회역설치회사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는 일시 회계감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된다(회사법 제346조 제4항).

8. 보수의 결정

현행법에서는 회계감사인의 보수에 관해서는 감사역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관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주식회사와 회계감사인간의 감사계약의 내용의 하나로서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역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회계감사인과 교섭하여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도 인정된다.

9.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

현행법에서는 회계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회사법 제847조) 일부면제제도를 도입하여(회사법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총주주의 동의에 따라 책임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424조).

회계감사인은 현행의 상법특례법에서도 제3자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책임이 있지만, 회계감사보고의 허위기재에 한정되어 있다(상특제10조). 회사법에서는 그 의무와 함께(회사법 제429조 제2항 제4호)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회사법 제4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10. 등 기

현행법에는 회계감사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

이 없지만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911조 제3항 제19호).

IV. 평가

현행 회사법에 있어서의 회계감사인 제도는 종래의 회계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강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회사법상의 회계감사인과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인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자동 임기연장 등의 규정에 관해 적격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즉, 회계감사인제도는 주주 보호 및 채권자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선임 및 해임규정을 포함하여 권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 경 덕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원)